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6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이용균 의원(1명)

찬 성 자: 김 경, 김성준, 김영철,
김재진, 남궁역, 박강산,
박승진, 박중화, 박춘선,
서준오, 송도호,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임종국,
최재란 의원(16명)

1. 제안이유

- 기후예산제의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체계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나.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6조제1항~2항,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자문·심의)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40명 이내’를 ‘40명 내외’로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7조에 따라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후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후예산 사업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산제 운영 성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후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6조 (자문·심의)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한다.</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⑦ (생략)</p>	<p>제7조 <u>삭제</u></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략)</p>	<p>제8조 <u>삭제</u></p>
<p>제9조(회의) ① ~ ③ (생략)</p>	<p>제9조 <u>삭제</u></p>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